

경제혁신
한국소비자원
경제혁신
경제혁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창조경제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1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6(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제품시장관리과 전민영 과장(043-870-5420), 김한식 연구관(5421), 곽현규 주무관(5425)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최난주 팀장(043-880-5831), 김민현 조사관(5595)
※ 리콜제품 전시 및 설명 : 1.26(화) 10:30,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

어린이 완구·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

- 불법·불량 승용완구 등 18개 제품 리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건표)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15.10~'15.12)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이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연도별 : '11년 512건→'12년 445건→'13년 537건→'14년 589건→'15년 10월 499건

-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찢려 다친 사고 442건(17.1%) 등이었다.

□ 제품안전성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 교구 :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설계된 완구를 말하며, 완구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음.

-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해 검출되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찢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1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및 작은부품 발생)되어 사례수로는 14건이나 제품수는 13개임.

- 추가로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국가표준(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 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여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의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되어 이들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 2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중복 검출)되어 제품수로는 5개임.

- 또한,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 → ②왼쪽 위 「리콜」 클릭 → ③ 「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이번 경합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 이번 공동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위해공산품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업을 강화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안전요건 조사 결과

【붙임 2】 표시사항 조사 결과

【붙임 3】 위해사례 분석 결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한식연구관, 박현규주무관 (☎043-870-5421, 5425),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국 최난주팀장, 김민현조사관 (☎043-880-5831, 5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요건 조사결과

□ 조사항목

- 유해물질 안전요건 :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 물리적 안전요건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포함한 작은 부품, 날카로운 끝, 도막강도

□ 조사방법 및 기준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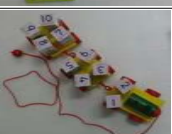
□ 조사대상 및 수행기관

- 어린이집 교구 : 한국소비자원
 -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 만2세, 만3세 프로그램으로 공급되는 9개 출판사 교구 46개 제품
 - ※ 해당 교구는 출판사와 어린이집 사이에 직접 거래되고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통해 구입함.
- 어린이 완구 : 국가기술표준원
 - 시중에 판매중인 36개월 이상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

1 어린이집 교구 안전요건 부적합 제품 현황 (한국소비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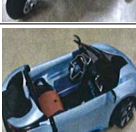
- (프탈레이트 가소제) 5개 제품이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소 1.1배에서 최대 452배 초과 검출
- (납)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 9.7배 초과 검출
- (물리적 안전) 5개 제품은 작은 부품 발생, 2개 제품은 날카로운 끝 발생,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옴.

순번	제조수입자명 (프로그램명)	모델명	제품사진	시험결과 (부적합내용)	비고
1	(주)엄지교육 (엔젤쁘레)	구슬폭포		녹색구슬: 납 2919.2mg/kg	기준치 9.7배 초과
2	(주)아리엔트에듀 (쁘띠그랑제꼴)	뽕뽕이 카드게임		투명고무: DEHP 45.20%	기준치 452배 초과
3	신한에듀 (누리엔)	물놀이공		녹색고무: DEHP 0.48%, 공기주입부: DEHP 25.10%	기준치 4.8배, 251배 초과

4	아이든교육 (베베토리)	동화놀이		투명비닐: DEHP 13.45%	기준치 134.5배 초과
5	(주)엄지교육 (엔젤브레드)	동물입체북		검정논플라스틱: DEHP 0.15%, BBP 0.31%	기준치 4.6배 초과
6	아이든교육 (베베토리)	알록달록 색깔옷 (애벌레)		투명코팅: DBP 0.11%	기준치 1.1배 초과
7	다담교육 (오르미 포)	기차블록		작은부품 발생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작은 부품 포함하면 안됨
8	(주)아이템엔트에듀 (쁘띠그랑제쥘)	마라카스		작은부품 발생(귀)	
9	(주)노벨과개미 (노벨키즈)	볼링놀이		작은부품 발생(눈)	
10	(주)노벨과개미 (노벨키즈)	토끼인형		작은부품 발생(눈)	
11	아이든교육 (에듀모아)	악기		날카로운 끝 발생	
12	(주)엄지교육 (엔젤브레드)	공룡귀로		날카로운 끝 발생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는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함
13	(주)위버에듀 (아이포레)	나무막대 인형		도막강도 불량	플라스틱 및 나무 부분은 채색 또는 그림 부 젖은 면포 마찰 시 착색되면 안됨

② 어린이 완구 안전요건 부적합 제품 현황 (국가기술표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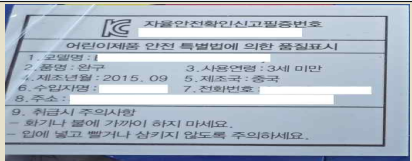
- (프탈레이트 가소제) 승용완구 3개, 봉제완구 1개, 스티커완구 1개 제품에서 기준치(함유량 0.1% 이하)를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 초과 검출
- (납) 승용완구 1개 제품에서 기준치(300mg/kg 이하)를 1.2배 초과 검출
- (카드뮴) 봉제완구 1개 제품에서 기준치(75mg/kg 이하)를 3.08배 초과 검출

유형	순번	제조사 또는 수입·판매사	모델명	제품사진	시험결과 (부적합내용)	비고
승용 완구	1	cheerway (주)에스엠코프 1544-1986	키즈휠S1 전동오토바이		바퀴연질검정: DEHP 0.4% DBP 0.3%	기준치 7배 초과
					전선: DEHP 12.1%	기준치 121배 초과
	2	jiajia (주)대호종합상사 02-225-1119	MINI -COOPER'S		좌면인조가죽: DEHP 13.7% DBP 0.3%	기준치 140배 초과
봉제 인형					좌면인조가죽: 납 360mg/kg	기준치 1.2배 초과
	3	FEITANG JIAJIA RIDE-ON CO., LTD (주)파파앤코 1544-7760	BMW i8 concept		좌면인조가죽검정 DEHP 16.0%	기준치 160배 초과
					좌면인조가죽갈색 DEHP 16.1%	기준치 161배 초과
스티 커	4	오로라월드(주) 02-3420-4100	봉제완구		목걸이원형매달: DEHP 9.3% DINP 3.8%	기준치 93배 초과
					목걸이원형매달: 카드뮴 231mg/kg	기준치 3.08배 초과
스티 커	5	(주)아트비전 02-337-4065	프리미엄 워터스티 커		PVC스티커뒷면: DEHP 0.77%	기준치 7.7배 초과

붙임 2 표시사항 조사결과

□ 완구 표시사항(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 완구는 아래 사항을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

표시사항	예시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 표시*(주의 · 경고 등), 사용연령, 크기 및 한계 체중, 제조국	

* 안전표시

- 연령 구분 및 표시(사용자 최소 연령 반드시 표시)
-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 경고 표시("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등)

1 어린이집 교구 표시 부적합 제품 현황 (한국소비자원)

- 조사대상 교구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97.8%)이 의무 표시사항을 1개 이상 누락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

표시항목	적합	부적합		
	표시	미표시	미흡	비고
전체 표시 사항	1	45		
KC인증기호 및 번호	11	35	-	
모델명	9	31	6	
제조연월	1	45	-	
제조(수입)자명	10	-	36	포장 등에 구분 없이 표시
주소 및 연락처	8	38	-	
안전표시	작은부품경고	0	8	만3세이상 작은부품 포함시
사용연령	9	36	1	
제조국	7	13	26	영문표기포함

붙임 3 위해사례 분석결과

□ 최근 5년간 어린이 완구 위해사례 빈발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10월) 접수된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

연도별 접수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0월	합계
				2014년 10월		
건수	512	445	537	589	499	2,582
				514		

□ 삼킴/흡입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아

- 위해원인으로는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하여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에 부딪치거나 맞아서 발생하는 충돌/충격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한 베임/찔림 442건(17.1%)의 순임.

위해원인별 접수현황

(단위: 건, %)

위해내용	건수	비율	위해내용	건수	비율
삼킴/흡입	853	33.0	눌림/끼임	51	2.0
충돌/충격	671	26.0	화학적영향	21	0.8
베임/찔림	442	17.1	폭발	10	0.4
미끄러짐/넘어짐	353	13.7	기타	24	0.9
추락/낙상	157	6.1	합계	2,582	100.0

□ 찰과상, 절상, 자상이 위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

- 피부가 외부 자극에 의해 찢어지는 찰과상과 날카로운 물질에 찢리거나 베이는 자상 및 절상에 의한 위해 사례가 1,375건(53.3%)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삼킴과 흡입을 원인으로 한 이물질 사고가 845건(32.7%)으로 그 다음임.

위해내용별 사고 발생 건수

(단위: 건, %)

위해내용	건수	비율	위해내용	건수	비율
자상/절상/찰과상	1,375	53.3	뇌진탕	47	1.8
이물질	845	32.7	피부이상	16	0.6
타박상	128	5.0	염좌/긴장	12	0.5
안구 및 시력손상	66	2.6	화상	6	0.2
탈구/골절/절단	63	2.4	기타	24	0.9
			합계	2,582	100.0

□ 사망사고도 발생, 보호자 주의 요구

- 치료기간 확인이 가능한 1,081건을 분석한 결과, 2주 미만의 사고가 905건(83.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1개월 이상의 사고가 9건(0.8%),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치료기간별 위해 발생 건수

(단위 : 건, %)

구분	당일	1주 미만	1~2주 미만	2~4주 미만	1개월 이상	사망	합계
위해 발생건수	288 (26.6)	80 (7.4)	537 (49.7)	166 (15.4)	9 (0.8)	1 (0.1)	1,081 (100.0)

* 치료기간 확인할 수 없는 1,501건은 분석에서 제외

□ 승용완구에 의한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

- 완구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1,325건을 분석한 결과, 승용완구에 의한 사고가 436건(3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블록류 187건(14.1%), 작동완구 157건(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품목별 사고발생 건수

(단위 : 건, %)

품목	건수	비율	품목	건수	비율
승용완구	436	32.8	악세사리	26	2.0
블록류	187	14.1	동전형/자석류	18	1.4
작동완구	157	11.9	완구용 건전지	18	1.4
발사체완구	74	5.6	가구완구	17	1.2
포장 및 정리함	66	5.0	역할놀이완구	14	1.1
교구	53	4.0	악기완구	13	1.0
구슬	52	3.9	공	9	0.7
인형	48	3.6	모형완구	9	0.7
장난감칼류	43	3.2	팬이	5	0.4
활동/운동완구	39	2.9	기타	41	3.1
			합계	1,325	100.0

* 완구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1,257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 주요 원인별 위해사례

○ 삼킴/흡입

발생년월	피해자 연령 및 성별	위해 내용
2015년 2월	만 6세, 남	장난감에 들어있던 수은 건전지를 삼킴
2012년 12월	만 2세, 여	곰인형 눈이 코에 들어가 병원 치료를 받음

○ 충격

발생년월	연령 및 성별	위해 내용
2014년 2월	만 7세, 남	장난감 총알을 맞아 눈에 손상을 입음
2012년 2월	만 2세, 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 부딪혀 눈에 손상을 입음

○ 내임/찢임

발생년월	연령 및 성별	위해 내용
2015년 1월	만 3세, 남	장난감 정리함에 부딪혀 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음
2013년 5월	만 4세, 여	화살모양의 장난감에 찔림

○ 놀림/끼임

발생년월	연령 및 성별	위해 내용
2015년 3월	만 1세, 남	장난감 자동차에 발이 끼어 골절됨
2014년 2월	만 5세, 남	블록 장난감이 치아에 끼어 빠다 치아가 탈구됨